

# 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268	(전화: 731-6347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출정구. 10.5.3.1.	시      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	
시행일자	90. 6.		
보조 기 관	도시계획국장 전	협조 기 관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2과장 (이문상)	문서통제 
	도시계획과장		발    송    인
	도시계획2과장		
기안책임자	송두명		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발신 명 의	시      장 
제    목	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결정		
영 구 보 존 문 서 	(제1안) : 내부결재		
	1. 도청 30310-12538('90.5.7)와 관련입니다.		
	2. 위호와 관련 서울시 고시 제222호('83.4.16)로 도시계획시설		
	변경된 용산구 산천동 산4-2상의 원유학교 설계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고		
	유위원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용산구청으로부터 추가 변경 요청이 있어, 단위		
	도시계획시설 1/20미만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므로,		
3.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6조 제1호			
"다"무의 규정에 의하여 법안과 법이 변경 결정포자 합니다.			
(제2안)			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계획국장)

제목 : 답음.

1.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편입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편입 서울특별시 고시 제219호('90.6.27)의 내용을 관보

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울산구청장 (도시정비국장)

제목 : 답음.

1. 도정 30310-3481호('90.2.6)와 같습니다.

2. 외오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편입 결정 요건 안을 수당에 대하여

편입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보고하오니 관내국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을 시행하는 등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5안) 337

수신 : 수신처참조

발신 : 시 (국) 장

제목 : 같 음

1.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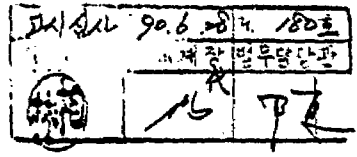
결정하였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지적과장,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담당.

위안대주회

서울특별시 고시 제222호  
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결정

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22호('83.4.16)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학교용지의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2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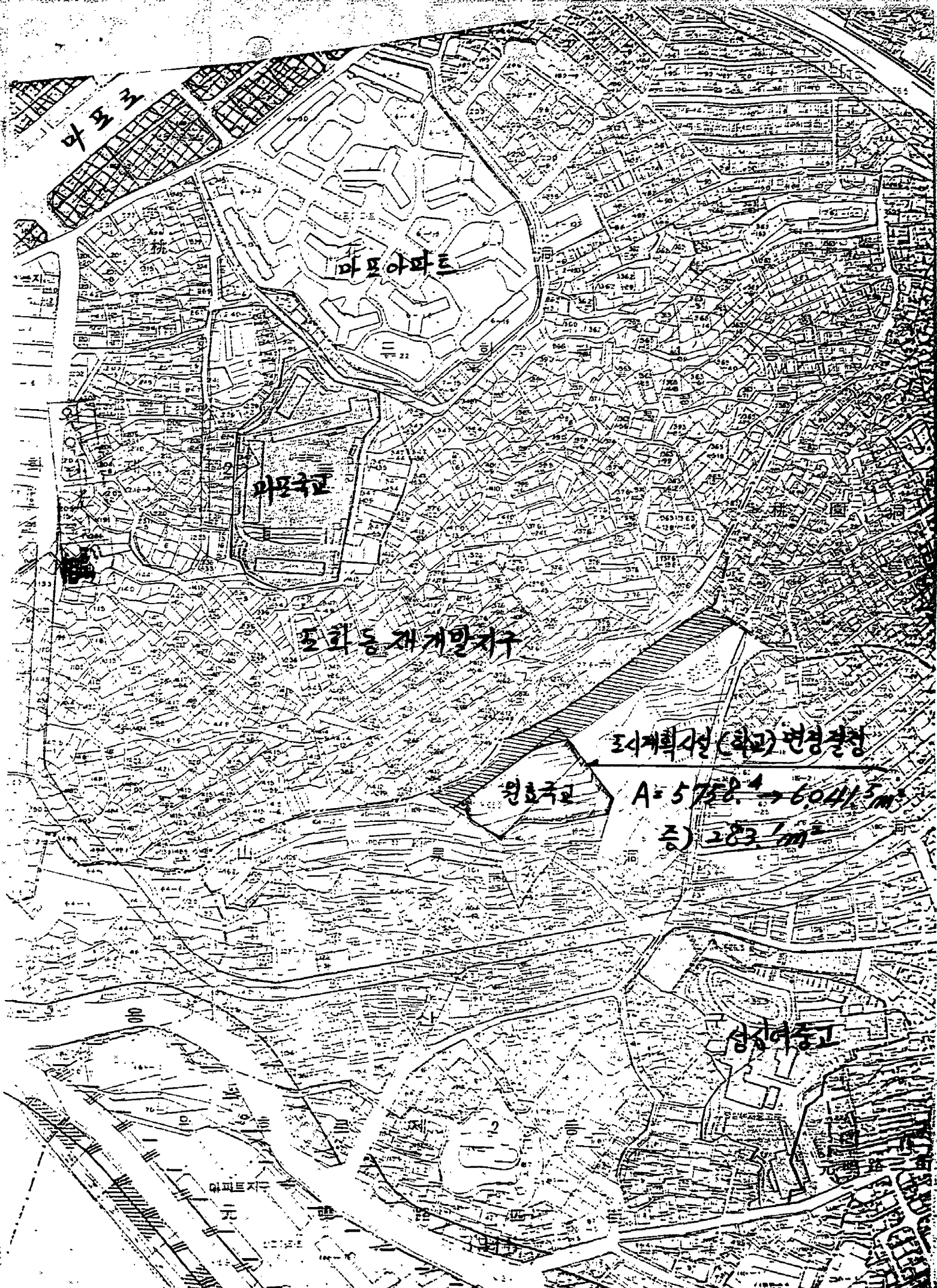
1990. 6.

서울특별시 광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 (m <sup>2</sup> )	비 고
기정	학교	용산구 산천동 산4-2일대	5,758.40	원호학교, 중, 283.1m <sup>2</sup>
변경	"	"	6,041.50	

나. 보편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
 비치도면과 발송. 끝.



마포3

마포아파트

마포국립

도회동 재개발지구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

원호국립

A = 5758.4 -> 6041.5 m<sup>2</sup>  
증) 283.1 m<sup>2</sup>

상선여중고

아파트지구